2015년 02월 10일(화)

이장회의



고 수 면

_	2	_
	2	

【총무담당】

□ 각종 사건·사고 등 동향보고 협조

O 대 상: 각종 사건사고 여론동향 미담사례 등

○ 협조사항 : 동향 발생시 면사무소에 즉시 연락요망

□ 2015 전국사업체조사 홍보

○ 조사기간 : 2015. 02. 04. ~ 2015. 03. 11.

○ 조사대상 : 2014년 기준 종사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

○ 협조사항: 조사원 방문시 협조 홍보

□ <u>풍수해보험</u> 가입신청 안내

O 신청기간 : 2015. 년 중

O 대상재해 : 태풍, 강풍, 홍수, 호우, 해일, 풍랑, 대설

○ 대상시설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O 상품유형

- 주택(보험기간 1년, 일시납원칙) : 주택법제2조 주거용 건물

※ 제외 : 건축물대장 등재되지 않은 건물, 부속건물(창고,외양간 등)

-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제외: 100m²미만의 온실, 농·임업용 이외의 온실

□ 가로등 고장 신고처 홍보

○ 신 고 처 : 고창군청 가로등 보수팀 ☎ 560-2418

※ 군청으로 고장신고 하시면 더욱 신속히 수리 됨.

○ 신고내용 : 가로등 관리번호(예시 : 해리면 동호리 011) 및 고장내용

□ 2015년 설 연휴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약국 지정 운영

	비상진료기관 및 휴일지킴이약국 운영 현황								
구분	의 료 기 관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2.18(수)	2.19(목)	2.20(금)	2.21(토)	2.22(일)	비고
	합 계	123		28	14	15	55	11	
67	소 계	5		1	1	1	1	1	
응급 의료 기관	고 창 병 원	고창읍 화신1길 9	560-5600	(응급실운영) 08:00-17:00/ 내과, 신경외과	(응급실운영) 08:00-17:00/ 내과, 정형외과	(응급실운영) 08:00-17:00/ 내과, 외과	(응급실운영) 08:00-17:00/ 내과, 외과	(응급실운영) 08:00-17:00/ 내과, 신경외과	
	소 계	18		4	3	3	5	3	
-	인 암 요 양 병 원	고창읍 천변북로 91	560-6600	09:00-13:00			09:00-13:00		
병원	유 정 요 양 병 원	고창읍 보릿골로 8	561-3355				09:00-13:00		
82	효 자 노 인 병 원	무장면 감덕길 19	561-0841	09:00-17:00	09:00-17:00	09:00-17:00	09:00-17:00	09:00-17:00	
	메디케어요양병원	성내면 이재로 81-9	561-6550	09:00-17:00	09:00-17:00	09:00-17:00	09:00-17:00	09:00-17:00	
	고창노인요양병원	고창읍 고인돌대로 1765	560-6100	09:00-17:00	09:00-17:00	09:00-17:00	09:00-17:00	09:00-17:00	
	소 계	24		5	0	1	18	0	
	신재활의학과의원	고창읍 중앙로 229	561-0475				08:30-13:00		_
	서 비 뇨 기 과 의 원	고창읍 중앙로 230	561-0121				08:30-13:00		
	정 내 과 의 원	고창읍 중앙로 220	563-3054				08:30-13:00		
	조 갑 호 의 원	고창읍 동리로 46	561-3270				08:30-13:00		
	고 창 미 래 의 원	고창읍 중앙로 175	561-5335	08:30-13:00		08:30-13:00	08:30-13:00		
	임 현 규 의 원	고창읍 중앙로 195	561-4321				08:30-13:00		
	십 자 의 원	고창읍 중앙로 200	561-5552				08:30-13:00		
	임 국 희 내 과 의 원	고창읍 화신1길 25	563-5005				08:30-13:00		
	강신녕가정의학과	고창읍 중앙로 206	561-2361				08:30-12:30		
의	고 창 안 과 의 원	고창읍 중앙로 206	561-1333				08:30-12:30		
원	편한신경외과의원	고창군 고창읍 보릿골로 124	562-9975				08:30-13:00		
	김해출마취통증의원	고창읍 중앙로 214	562-1000	08:30-12:00					
	건 강 의 원	무장면 무장읍성길 4-3	563-6500	08:30-13:00					
	하 나 의 원	상하면 상하로 68	564-7270	08:00-12:00					
	성 심 의 원	해리면 해리중앙로 88-1	561-0795	08:30-13:00			08:30-13:00		
	제일가정의학과	대산면 대성로 238	561-3302				08:30-12:30		
	대 산 연 합 의 원	대산면 대성로 227	563-5639				08:30-13:00		
	삼 성 의 원	심원면 심원로 202	563-1441				08:30-13:00		
	흥 덕 제 일 의 원	흥덕면 선운대로 3728	561-3535				08:30-13:00		
	서 물 가 정 의 원	흥덕면 문화1길 5	564-6269				08:30-13:00		
	무 리 의 원	부안면 복분자로 899	564-7227				08:30-13:00		

계속)

치 과	소 계	1		0	0	0	1	0	
의 원	무 리 치 과	고창읍 중앙로 195	563-7528				09:00-12:30		
	소 계	8		1	0	0	7	0	
	새 생 명 한 의 원	고참읍 화신1길 25	564-9633				08:00-13:00		
한	원 괌 한 의 원	고창읍 중앙로 180	564-1717	08:00-13:00			08:00-13:00		
	줌 맘 한 의 뭔	고창읍 중앙로 188	564-0892				08:00-13:00		
의	겸 희 한 의 원	고창읍 중앙로 206	563-3000				08:00-13:00		
원	겸 희 좀 밀 한 의 원	고참읍 보릿골로 108	562-0175				08:00-13:00		
	효 도 한 의 원	해리면 해리중앙로 94	561-1075				08:00-13:00		
	대 산 한 의 원	대산면 대성로 234	561-6775				07:30-15:30		
	소 계	36		10	4	4	17	1	
	고 려 약 국	고창읍 중앙로 175	562-0788	08:00-13:00			08:00-18:00		
	고 참 백 제 약 국	고창읍 중앙로 215	564-0683				08:20-15:00	09:00-17:00	
	고 창 좀 로 약 국	고창읍 중망로 226	564-8577	09:00-17:00	09:00-17:00		08:30-15:00		
	버 들 약 국	고창읍 중앙로 229	561-5611	09:00-13:00			08:30-15:00		
	삼 록 수 먁 국	고창읍 동리로 45-1	564-2976				08:30-13:00		
	새 백 제 약 국	고창읍 중앙로 224	564-0358				08:30-15:00		
	서 물 약 국	고참읍 화신1길 15	564-8363	09:00-18:00		09:00-18:00	09:00-18:00		
먁	명 호 약 국	고참읍 성산2길 6	564-3666	09:00-18:00	10:00-18:00	09:00-18:00	08:30-18:00		
	무 리 들 약 국	고참읍 화신1길 25	561-1183				08:30-12:00		
	제 밀 약 국	고참읍 중앙로 206	564-1170				08:00-13:00		
국	남 문 약 국	무장면 무장읍섬길 6	562-9400	08:00-13:00					
	삼 하 약 국	상하면 상하로 68	561-3209	08:00-12:00					
	소 망 약 국	해리면 하련1길 10-12	562-2882	09:00-17:00	09:00-17:00	09:00-17:00	09:00-16:00		
	해 리 약 국	해리면 해리중암로 87	561-5885	08:00-13:00			08:00-13:00		
	대 산 약 국	대산면 대성로 234	564-4456				08:00-15:00		
	중 망 약 국	대산면 대성로 235	562-7700				08:00-17:00		
	진 약 국	흠덕면 선문대로 3728	562-6333	08:00-18:00	08:00-18:00	08:00-18:00	08:00-18:00		
	화 신 약 국	흥덕면 문화1길 5	562-6360				08:00-16:00		
	조 은 약 국	부안면 복분자로 903	562-1019				08:00-13:00		
보 건	소 계	5		1	1	1	1	1	
소	고 창 군 보 건 소	고창읍 전봉준로 90	560-8773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계속)

	소 계	5		1	1	1	1	1	
	성 송 면 보 건 지 소	성송면 대성로 763-4	560-8348	09:00-18:00					
보 건 지	마 산 면 보 건 지 소	마산면 녹두로 763	560-8197		09:00-18:00				
지 소	공 음 면 보 건 지 소	공음면 공음길 89	560-8258			09:00-18:00			
	성 내 면 보 건 지 소	성내면 낙산로 426	560-8468				09:00-18:00		
	신 림 면 보 건 지 소	신림면 임리1길 9	560-8498					09:00-18:00	
	소 계	21		5	4	4	4	4	
	덕 정 보 건 진 료 소	고창읍 전봉준로 204-2	560-8780		09:00-18:00				
	백 양 보 건 진 료 소	고창읍 백양길 20	560-8781					09:00-18:00	
	내 참 보 건 진 료 소	고수면 내창수곡길95-2	560-8782				09:00-18:00		
	반 암 보 건 진 료 소	아산면 인천강변로 656	560-8783			09:00-18:00			
	강 남 보 건 진 료 소	무장면 석곡로 65	560-8784	09:00-18:00					
	송 산 보 건 진 료 소	공음면 건동길 71-20	560-8785			09:00-18:00			
보	평 촌 보 건 진 료 소	공음면 덕암로 257	560-8786				09:00-18:00		
٦,	장 호 보 건 진 료 소	상하면 용사길 5	560-8787				09:00-18:00		
건	자 룡 보 건 진 료 소	상하면 진암구시포로 344	560-8788	09:00-18:00					
진	사 반 보 건 진 료 소	해리면 봄수로 669	560-8789			09:00-18:00			
	금 평 보 건 진 료 소	해리면 금평1길 17	560-8790		09:00-18:00				
료	관 동 보 건 진 료 소	성송면 관동로 234	560-8791		09:00-18:00				
	해 룡 보 건 진 료 소	대산면 해룡로 95	560-8792					09:00-18:00	
소	성 동 보 건 진 료 소	대산면 섬동길 9-4	560-8793	09:00-18:00					
	정 동 보 건 진 료 소	심원면 고전로 256	560-8794					09:00-18:00	
	용 반 보 건 진 료 소	흥덕면 묭반만길 63	560-8795	09:00-18:00					
	낙 산 보 건 진 료 소	성내면 은낙길 71	560-8796			09:00-18:00			
	덕 산 보 건 진 료 소	성내면 근촌로 274-1	560-8797		09:00-18:00				
	가 평 보 건 진 료 소	신림면 가평리 478	560-8798	09:00-18:00					
	상 맘 보 건 진 료 소	부만면 인촌로 534	560-8799				09:00-18:00		
	선 문 보 건 진 료 소	부만면 질마재로 29-20	560-8750					09:00-18:00	

□ 한빛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 홍보

1 정 부 방 침

□ 법 령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재대책법 (14.5.21)

(현 재)

(개 정)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 「예방적보호조치구역 : 5km」
 [8~10km] → 「10km」
 ■ 긴급보호조치구역 : 20~30km

- 예방적보호조치구역 : 방사선 비상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주민소개 등 예방적으로 주민보호조치를 실시하는 지역.

- 긴급보호조치구역 : 방사선 피해 평가 또는 방사선감시 결과를 기반으로 주민 거리별 지역별 구분 긴급히 대피하는 지역.

•

- O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설정 시 고려사항
 - 인구분포, 도로망, 지형 등의 그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 주민보호를 위한 비상대책의 실효성.

□ 추 진 일 정

- 비상계획 구역 설정 확정 (원자력안전위원회) : 2015. 5. 21
- 방사선 비상계획 및 행동매뉴얼 작성 및 승인 (원자력안전위원회) : 2015.12

2 추진 및 향후계획

□향후계획

O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안) 군의회 설명 : '15.1

○ 주민설명회 개최 의견수렴 (신림,흥덕,성내): '15.1 ~ 2

O 한빛원전 고창안전협의회 의견 수렴 : '15. 1 ~ 2

○ 최종안 결정 후 전라북도에 의견 제출 : '15. 2

O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정 (원안위) : '15. 5. 21

한수원 추진 [안]

3

[방사선비상계획구역 : 20km ~ 30km]

- (제1안) 법개정 최대 30km이내 인접 지형. 지물. 리 경계
- (제2안) 원자력안전기술원 (KINS)의 연구결과에 바탕을 두어 20km이상 인접 지형, 지물, 리 경계
- (제3안) 20km ~ 30km이내의 산을 기반으로 인구밀집 등을 고려 인접 지형.지물. 리 경계

4 우리군 추진 방향

[방사선비상계획구역 : 20km ~ 30km]

- □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설정 시 관련기관. 단체. 주민의견수렴 후 결정.
- □ 법 개정에 따라 20km~30km의 범위를 벗어난 지역
 - 성내면 : 전체 (1,188세대 2,230명)
 - 흥덕면 : 석우리, 하남리, 용반리 (181세대 351명)
 - 신림면: 도림리, 덕화리, 가평리 (243세대 482명)
 - ※ 의견수렴 후 반영 여·부 결정.

※ 우리군 방향은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시 30km를 기준으로 하되 성내, 흥덕, 신림면의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포함 설정 요구 예정.

〈 2015년 1월부터 〉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입금 납부가 편해집니다.

1 납부고지서, 이젠 필요 없습니다.

- **지금까지**, 납부고지서(OCR)를 공과금전용수납기에 넣거나 은행창구에 제출해야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지방세입금을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 O **앞으로는**,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u>은행 현금입출금기에 통장 또는 신용</u>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지방세입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카드·통장이 아닌 경우 또는 타인이 본인의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입금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 고지서상의 전자납부번호(19자리) 또는 전자수용가번호(15자리)만 알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고지서는 납부안내를 위해 지금과 마찬가지로 계속 보내 드립니다.
 - 현금입출금기 이용이 어려운 분은 고지서 지참하여 은행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절차 ≫

현행
OCR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 방문
OCR 전용수납기 또는 은행창구를 통해 납부
개선

2 전국 어디서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거주 지역별로 납부 가능한 은행이 정해져 있어, 다른 지역의 상하수도요 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지방세입금을 내는 것은 불편했습니다.

OCR 고지서 없이 은행 방문 현금입출금기를 통하여 조회·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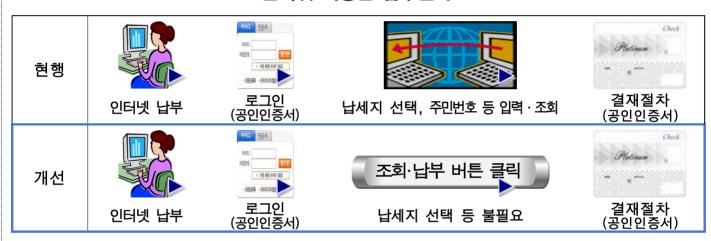
- **앞으로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지방세입금을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 가능 은행 : 총 22개) 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기업, 국민, 외환, 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새마을, 신협, 상호저축, 우체국, 산림조합

3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합니다.

- **지금까지**, 일부 자치단체만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했고, 사용가능한 신용카드 수도 3~5 개로 제한되어 있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았습니다.
- O **앞으로는**, 은행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국내 모든 신용카드(14개사)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로 납부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납부하시면 타사카드(방문은 행에서 발급한 카드 외)로 납부하실 경우에만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됩니다.

4 인터넷을 이용한 납부도 쉽고, 편리해집니다.

≪ 인터넷 이용한 납부절차 ≫



5 그 외에도 다양한 납부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O 은행이나 인터넷(일부 지자체 운영)에서 고지서 건별로만 납부하였으나, 앞으로는 은행 현금입출금기·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해 전국의 상하수도요금, 주정 차위반과태료 등 지방세입금을 **한번에 일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는 1회 4건씩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등 인터넷을 통한 납부의 경우 여러 건을 선택 또는 전체납부 가능합니다.
 - 특히, 위택스의 경우 **통합납부바구니** 기능을 통해 지방세, 지방세외수입(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 반과태료 등), 환경개선부담금을 한번에 일괄 납부 가능합니다.

□ 60세 이상 주민 폐렴구균 예방접종 실시

○ 접종대상 : **60세 이상** 주민 중 **미접종자** ※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해당

O 접종시기 : 연중

○ 접종장소 : 보건소(현재 실시중), 면보건지소(2월 중순부터)

○ 접종시간 : 평일 오전중(09:00~12:00)

O 문의전화 : 560-8168

□ 2015년 국가 암 조기 검진 및 건강검진 실시

O 기 간 : 2015년 12월 31일까지

○ 대 상 : 2년 주기 생년월일(짝·홀수)시행 (2015년 **홀수년도**)

○ 검진항목: 5대암(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요검사 및 신체계측 및 갑상선기능검사 등 기본검사

사업	구 분	내 용	비고
	위 암	○ 만 40세 이상 남·여	2년 간격
암 조 기	간 암	○ 만 40세 이상 남·여 ○ 간경변증이나 B형간염바이러스	
검	대장암	O 만 50세 이상 남·여	1년 간격
진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	2년 간격
	자궁암	O 만 30세 이상 여성	2년 간격

- 검진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검진기관 지정
 - ☞ 고창병원, 인암병원, 정 내과, 임 국희내과
- 출장검진기관에서 순회 출장검진도 실시
- 검진비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80% 국비 10% 지방비 10%
- O 마을 방송을 통한 건강검진 수시 홍보 협조(국정평가 대상)

□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홍보 안내

프로그램명	요가교실	노래교실	비고
운영일시	매주 화 , 금요일 19:00	매주 월, 목 요일 19:00	
시 작 일	1월 27일부터	1월 26일부터	
강 사 명	김영희	송보경	
장 소 주민자치센터		터 2층 강의실	구 복지회관
운영기간	10개월	10개월	

□ "고수해마루 작은도서관" 이용 활성화 홍보

○ 운 영 일 : 매주 월 ~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

○ 운영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토요일 09:00~15:00)

○ 위 치: 고수면 주민자치센터 건물 1층

○ 도서대여 : 1인 1회 5권(대여기간 : 10일, 연장 7일 가능)

○ 보유도서 : 철학,종교,사회과학,자연과학,기술과학,예술,언어,문학,역사류

□ 2015년 달라지는 금연제도

11 개 요

-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법상 지정된 대형건물, 공공기관 청사 등 시설 내 흡연이 전면 금지(흡연실 허용)
 - 일부 음식점내 설치된 흡연석(실내를 유리벽 등으로 천장부터 바닥까지 차단되어 담배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설비를 갖춘 경우)의 경우, 흡연석을 2014년말까지 흡연실로 특례 인정
- 음식점*의 경우 전면금연대상임
 -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단란·유흥주점 적용 제외)

② 2015년 주요 변경 사항

-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 '14년말 흡연석 특례 기간이 종료되어 기존 흡연석은 모두 폐지되고, 흡연실만 운영 가능(흡연실에서는 영업 행위 금지)
- ※ 금연클리닉(보건소, 면사무소 보건담당) 등록 신청시 금연패치, 금연파이프 등의 보조제 제공

□ 2015년 출산장려금 지원제도 변경 안내

-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부 또는 모)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둘째자녀 이상 출산가정
- 지원내용 :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지원
 - 변경 지원: 2015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3자녀 이상 2회 분할지원**: 회당 50%씩 출생시 1회, 1년 후 지급분은 계속해서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할 경우 지원
 - o 출산장려금 지원 변경 전 · 후

	변경전	변경후	
구 분	2014년 12월31일 출생아까지	2015년1월1일 출생아부터	비고
2자녀	100만원	150만원	
3자녀	300만원	500만원	
4자녀	500만원(4자녀 이상)	700만원	
5자녀 이상		1,000만원	

○ 구비서류

- 출산장려금신청서 1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확인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보호자 예금통장 사본 1부.
- 부모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경우는 행정정보 동의서 각각 1부
- 다문화가정 및 부모 주민등록 달리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1부.

○ 지원절차 및 구비서류

- 읍·면 출생신고 후, 신청서 작성제출 ⇒ 읍·면장 확인 접수 ⇒보건소에 제출 ⇒ 검토 후 지원 여부 결정

【 주민생활지원 담당 】

□ 2015년 경로당 양곡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관내 38개 등록경로당
- 지원내역 : 7포(1포 20kg)
- O 배송예정 : 3월 1포, 10월 2포, 11월 2포, 12월 2포
- ※ 경로당 1분기 운영비, 동절기 한시난방비 지급 완료.

□ 설연휴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관리 대책 추진

- **○** 추진기간 : 2015. 2. 16. ~ 2. 22.
- O 추진내용
 - : 설맞이 마을 대청소 운동(마을 자체 추진)
 - : 쓰레기 처리 상황반 편성 운영
 - :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 휴무일 운영
- 미 수거일 : 2. 19. ~ 2. 20.(2일)

□ 거동불편자 보행보조기 지원 신청

- 신청기간 : ~ 2015. 2. 27.까지
- 신청대상 : 만65세 이상 거동불편노인

※ 제외대상: 기 지원자, 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입소 노인

- 지원품목 : 보행보조기(1대당 약15만원 정도)
 - 자부담 45,000원(30%), 군비 105,000원(70%)
- 지원절차 : 신청서 접수 → 대상자 확정 후 → 본인부담금 입금
 - → 대상자 자택으로 보행보조기 배송
 - ※ 대상자 선정: 고령자 및 생활이 어려운 자 우선 지원
- 신청장소 : 면사무소 주민복지팀 ☎560-8154

[붙임 1]

노인보행보조기 지원 신청서

11	성명			주민등록 번 호			_	
대 상 ,	주소	전북 고	창군 고수면 _		((마을명:)	신주소 기재
사	연락처	자택			HP			
Ž	신청품목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사호	회활동정도	예) OO마을	경로당 주O회	방문, 논・밭등	5사 경직	- 등		
*	건강상태		편정도(혼자 외) 등 질환정도				ㅏ능, i	혼자 외출
	경제상태 코호구분)							
	비고							

★) 담당공무원 직접 확인하여 기재

위와 같이 노인보행보조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5년 월

신 청 인 성 명 : (인또는서명) 주 소 : (연락처) 대상자와의 관계 :

일

고창군수 귀하

[산업경제담당]

□ '15년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한 : 2015. 2. 25(수)까지

○ 대 상: 무농약 및 유기농 인증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최소 1,000 m²이상 인증 득한 농가(법인)

○ 지원품목 : 천적, 미생물제제등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 원료

○ 신청장소 : 농지소재 읍·면사무소(접수 시 친환경 인증서 확인 필수)

○ 지원금액: 유기농 2,000천원/ha, 무농약 1,500천원/ha

□ 2015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신청 홍보

○ 신청기간 : 2015. 3. 1. ~ 3. 31.

○ 지원내용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 사업대상자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 '10년 이전에「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저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포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지급단가
 - 논 : 유기 600천원/ha, 무농약 400, 저농약 217

- 밭 : 유기 1,200천원/ha, 무농약 1,000, 저농약 524
- 유기지속직불 : 논 300천원/ha, 밭 600천원/ha
 -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
- 지원한도 : 농가(경영체)당 0.1 ~5.0ha
- 지급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만 지급)
 - 지급기간 : 유기농산물 5년(5회), 무농약·저농약농산물 3년(3회)
 - * '10년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5회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불금을 최장 5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5회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추가 3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 지급)

□ 2015년 빝농업 직접지불제시업 변경시항 안내(붙임1)

- 신청기한 : 동계작물 : 2015. 3. 2 ~ 3. 31, 하계작물 : 2015. 3. 2 ~ 6. 15
- 주요 변경사항
 - 밭농업고정직불제도 추가
 - 지목상관없이 '12년도 ~ '14년도까지 밭농업이용 농지 추가
 - 지원단가 상향
 - 지급면적 폐지 등
 - ※상세 변경사항은 <붙임1> 참조

□ 2015년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사업 변경사항 안내(붙임2)

- 신청기한 : 2015. 3. 2 ~ 6. 15
- 주요 변경사항
 - 신규진입요건 완화
 - 승계대상 및 범위 확대 등
 - ※상세 변경사항은 <붙임2> 참조

□ 2015년 농작물재해보험 농기부담금 지원시업 안내

- 사업기간 : 연 중
- 사업내용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 필요한 농가부담금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
- 지원금액 : 농가부담액의 54%
- ○문의전화: NH농협손해보험(주) 전북지역총국(☎240-3196)

□ 봄철 산불예방 홍보 및 계도방송

- 산불취약기간 : 2015. 2. 1. ~ 5. 15.
- 중점 추진사항
 - 취약지 인접(산림연접지 100m이내) 농산폐기물 소각 절대금지
 - 산불 발생시 행정기관 즉시 신고로 초등 진화토록 주민 홍보
 - 마을이장 및 담당직원이 산불계도 마을방송 실시(하루3회이상)
- 안 내 문 : 붙임3. 참조
 - ※ 산불신고: 읍사무소(560-8045,8161), 산림축산과(560-2603)

□ 무료 산불예방 휴대폰 통화연결음(비즈링) 가입 홍보

○ 접 수 : 2015. 1. 19(월)부터

○ 서비스기간 : 2015. 2. 2(월) ~ 5. 15(금)

○ 신 청 방 법: http://credin.co.kr/ad/forest 사이트 방문 신청

○ 참 고 사 항

- 명의자 주민번호 불일치 시 가입되지 않음

- 가입이후 통신사 변경시 자동해지 됨
- 이용료 산림청에서 일괄부담
 - ※ 통신사에따라 요금부과후 월말에 차감되는 방식도 있음
 - 서비스기간 종료시 자동해지 됨

□ 2015년 농어촌복지 지원사업 신청 및 홍보

○ 기 간 : 연 중

○ 대 상: 읍면 농업인(관내거주하며 실제 영농종사자)

○ 내 용: 3개 사업

구분	사 업 명	지 원 대 상	사 업 내 용	비고
1	농가도우미 지원	출산여성농업인	도우미 이용 지원 (인건비 60일 지원)	
2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농업인자녀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3	영농도우미 지원	영농활동 어려운 농업인(사고등)	인건비 10일 지원	

□ 농업인 안전공제 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간 : 연중(기 가입자는 가입시점 1년이내 갱신)

○ 지원금액 : 농업인 부담금의 100%를 정액 지원

○ 지원대상 : 만 15세~84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림업인

- 세대별 가입인원 제한 없음

- 상시 직장 재직자, 사업자등록자는 제외

○ 협조사항 : 각 마을별 수요자들을 파악하여 조속히 신청토록 홍보

□ LPG용기 가스공급자 부담안내 및 사용연한제 안내

- 가스공급자가 가스소비자에게 액화석유가스 공급시 공급설비를 공급자 부담으로 설치해야 함(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 LPG용기 교체(설치) 비용은 가스 공급자 부담
- ※ 가스 공급자가 LPG용기 교체(설치)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 전가가스공급자에게 과태료 처분됨
 - LPG용기 사용연한제 유예기간 적용
 - · 적용 시기 : 2013. 10. 23.(산업통산자원부 공고 제30호)

	제조 년도	일부 유예 기간			
88.12월 이전	87.10월 ~ 87.12월	2015.4.30.까지 사용 가능			
	88. 1월~88. 6월	2016.4.30.까지 사용 가능			
제조용기	88. 7월~88.12월	2017.4.30.까지 사용 가능			
89.1월이후 제조용기 : 용기 재검사후 사용가능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 기간(제39조 관련)

		신규 검사후 경과 연수				
용기의	종류	15년 미만	15년 이상20년미만	20년이상		
			재검사 주기			
액화가스용기 500 <i>l</i> 이상 500 <i>l</i> 미만		5년마다	2년마다	1년마다		
		5년	2년마다			

□ 전라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 2015년도 3월중 교육

○ 교육과정

교육과정	교육기간	교육대상	교육인원	담당자	신청기간
제과제빵	3.5~6 (14시간)	농업인, 제과·제빵 희망자	20명	김자인 290-6435	
한과및한식제조 주민번호기재 (보험기입)	3.17~19 (21시간)	농업인, 한과 및 선식제조 희망자	20명	김자인 290-6435	
귀농인역량강화	3.24~26 (21시간)	영농 경력 1년~3년 이내 귀농인	20명	강은영 290-6419	
유통마케팅핵심리더	3.17~20 (25시간)	유통업 종사자 및 농업인	20명	송주창 290-6417	· 읍면동→시군
장류가공 주민번호기재 (보험기입)	3.24~27 (28시간)	농업인 및 장류가공희망자	20명	김종욱 290-6418	15. 2. 13.(音)
귀농인 시설온실실무	3.5 (7시간)	귀농인 및 예비농업인	24명	박길준 290-6434	
마이스터농가 현장실습 주민번호기재 (보험기입)	3.12~4.9 (35시간)	마이스터 졸업농가 및 시설원예 핵심리더 농업인	24명	박길준 290-6434	
컴퓨터 · 인터넷 활용 기초	3.3~3.5 (13시간)	컴퓨터, 인터넷 처음 사용하는 농업인(초보자)	25명	전대웅 290-6405	

- ※ 시·군교육관련 부서 통해서 교육신청 (읍·면·동→시·군→농식품인력개발원)
- ※ 고추 재배, 토마토 재배, 주류가공 과정 : 현장 실습시 사고 대비를 위한 보험가입을 하므로 반드시 <u>주민등록번호 기재 요망</u>

<붙임1>

< '15년도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 주요 변경사항>

구 분	현 행(2014)	변 경(2015)	변경 사유
발고정직불제 도입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현행 제도에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밭농업고정직불제도 추가	
지원대상 농지	- 공부상 지목이 밭인 토지로서 당해연도에 밭농업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되는 밭 - 지목과 상관없이 논농업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농지와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 중 전년도 10월부터 해당 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식량·사료작물을 재배에 이용되는 논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추가	밭고정직불제 도입으로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직전 2년이상 경작한 농업인		
지원 품목		밭에 재배하는 모든 품목 (휴경, 시설면적 포함) 추가	
지원 단가	- 밭재배 26개 품목 : 40만원/ha - 논 재배 식량·사료작물 : 40만원/ha	 받고정: 25만원/ha 발재배 26개 품목: 40만원/ha(밭고정 25 만원/ha 포함) 논 재배 식량·사료작물: 50만원/ha 	받고정직불제 도입에 따른 기존 지원 품목과 차별화, 품목별 소득, 쌀관세화에 따른 여건 등을 고려
보조금 지급면적의 상한기준	쌀고정직불금 수급면적에 따른 밭농업직불금(26개 품목) 수급면적 제한 - 5ha이상 8ha미만인 경우 밭농업보조금 지급상한은 3ha - 8ha이상인 경우 밭농업보 조금 지급상한은 2ha	폐지	밭고정직불제 시행과 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지급기준 완화

구 분	현 행(2014)	변 경(2015)	변경 사유
발농업보조금과 타 보조금 중복 지급 제 한 농지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 정」제32조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지급대상 농지 -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밭고정직불금은 중복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 규칙」을 개정하여 일부 중복지급 제한 대상 농지
발농업보조금 등록신 청 기간 등	등록신청 - 동계작물: 2. 1.~3.21 하계작물: 2. 1.~6.15. 이행점검 - 동계작물: 4. 1.~6.15 하계작물: 7. 1.~9.30.	등록신청 - 동계작물: 3. 2.~3.31 하계작물: 3. 2.~6.15. 이행점검 - 동계작물: 4.13.~6.15 하계작물: 7. 1.~9.30.	농업경영체등록정보일 제갱신 종료
이행점검 표본 선정	 발재배 26개 품목 : 30% 이상 논 재배 식량·사료작물 : 50%이상	받고정: 50%이상밭재배 26개 품목: 30%이상는 재배 식량·사료작물: 50%이상	밭고정 추가
보조금 부당수령 신고포상금	_	밭고정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해 건당 50만원, 1인 연간 최대 200만원	
직불제 상담 콜센터 (1670-8002) 업무 수 행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 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불제 민원상담 업무를 농관원으로 이관

<u>'15년도 쌀소득직불제사업 시행지침 주요 변경사항</u>

구 분	현 행(2014)	변 경(2015)	변경 사유
		·	○'농업을 주업으로 하 는 자' 기준 완화로 대 사자 화대
71 / 1년	○농산물 판매액 9백만	지 경작	0/1 4 41
	2년 이상 주소를 해 당 시·구에 두고, 해 당 시구의 1천제곱미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해 당 시·구에 두고, 해 당 시구의 1천제곱미 터 이상 농지를 직전 1년 이상 경작	
○ 신규진입 요건	○지급대상 농지에서 직전 2년이상 1만제 곱미터 이상 경작 ○지급대상 농지에서 직전 2년이상 농산물	○지급대상 농지에서 작전 3년 기간 중1년 이상 1	○'신규진입' 요건 완화로 대상자 확대 및 기존 수령자와 신규 신청자 간의 형평성 제고
○ 승계 대상 및 범위	승계만 인정 ○(요건) 배우자 및 직	불가피한 사유 추가 ○ 직계비속의 배우자 추가, 1년 이상 주소	○ 승계 대상 및 범위 확 대로 승계 기준 현실 화 및 대상자 확대
○지급 상한면적	•	○지급상한면적 - 개인 : 30ha - 법인 : 50ha <u>단, 들녘경영체 운영</u> 법인은 40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 지급상한면적 상향으로 영농규모화 유도
○부당수령 신고포 상금	○건당 10만원, 1인 연 간 최대 100만원	○건당 <u>50만원</u> , 1인 연 간 최대 <u>200만원</u>	○포상금 수준 현실화로 신고 활성화를 통한 투 명성 제고 유도
○신청서류 제출		보'로 확인 가능한 경	○신청서류 간소화로 신 청자의 편의 제고
○신청 시기	o'14.2.1 ~ 6.15	°′15. <u>3.2</u> ~ 6.15	○시스템 정비

봄철 마을주민 산불예방 안내문

마을주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고 산불을 발생케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토록 하기 위해서는 마을이장님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산불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을이장님 협조사항

- 1. 마을주민 산불예방 교육실시(마을 회의·행사 등)
 -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의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소각 금지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때에는 100m 밖에서도 소각 금지
 - 산과 연접된 주택에서 쓰레기 소각 주의 계도
 - *쓰레기 소각시 주택 앞마당에서 소각 조치
 - 산나물채취, 산책시 산림내에서는 화기물소지 및 불 피우는 행위 금지
 - 청명·한식 전후 묘 정비작업시 불 피우는 행위 금지

2. 산불예방 홍보

● 산불조심기간(봄철 2.1~ 5.15, 가을철 11.1~12.15)동안 마을방송 매일 실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시기에는 매일 3회 이상 방송 실시

실수로 산불을 내도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 경로당, 부녀자 세대, 산 연접 농가 방문 산불조심 독려
- 타인 소유 산림에 방화한 자 : 7년~10년 이하의 징역
-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기 소유의 산림을 불에 타게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자 : **과태료** 100만원
 - ▷화기 또는 인화·발화물질을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간 자 : **과태료 30만원**
 -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 **과태료** 20만원
 - ▷산림 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들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 : 과태료 30만원